



##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제 정 일	2012.11. 1
개 정 일	2016.10. 1
개정차수	3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 3조 (자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 산업체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3.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민간 산업체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②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 4조 (임용)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 5조 (임용기간 및 재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재임용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최초 신규 임용 시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재임용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산관학협력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 8. 1)

④ 산학협력중점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6조 (계약의 체결) ① 총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산학협력중점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임용기간, 보수, 재계약에 관한 사항,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 7조 (승진)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은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년수에 해당하는 교원 중 승진심사 평가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1)

1. 승진 소요년수 (신설 2013. 3. 1, 개정 2016.10. 1)

직급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
소요년수	6	5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심사 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 8. 1)

③ 승진 임용시기는 연 1회 10월 1일자로 한다.

제 8조 (의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부(과)에 소속되어 주당 책임강의 시간 이상을 강의하며, 주당 책임강의 시간은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30% 이상을 감면한다. 다만, 주당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는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이 타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9조 (역할)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실무중심형 강의,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등의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②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사업 기획, 기술·경영 자문, 기술이전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③ 학생취업 연계, 창업 강좌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등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제10조 (신분보장 등)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본교 제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 또는 소속 학부(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교 제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16.10. 1)

제11조 (처우)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